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2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 · 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허가 · 승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의 실시 ·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련 조치의 집행 및 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의 주체도 실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정비하되,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 특수한 권한 및 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과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檢事(군검사를)”을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로,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을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검사(군검사를)”로, “被疑者별”을 “피해자별”로,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를 許可하여 줄 것을 請求”를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를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신청 및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및 방법과 해당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해당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신청·청구하는 취

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및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중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허가서를 발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달성되었을”을 “달성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를 “사법경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로, “연장을”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 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를 “제6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1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사법경찰관”으로,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를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소속기관”을 “하며, 소속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해당 조치로”를 “그 조치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가 청구된”으로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 항 외의 부분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그 허가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고,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그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

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며,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제9조제1항 후단 중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을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으로, “執行”을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을 “표지 사본을 교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를 위탁받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않을”을 “아니하는”으로, “누설할 수 없다”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그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집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하거나 통보를 받은”으로 하

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다만,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

제9조의2제5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을 “수사처검사는”으로, “수사처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을 “군사법경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 수사처검사”로, “각호”를 “각 호”로, “때”를 “경우”로, “제1항 내지”를 “제1항부터”로 한다.

제9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법경찰관은 송신·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 다만,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 다만,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

제9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검사는 송·수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송신·수신”으로, “집행한 경우 그”를 “집행한”으로,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를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로, “송부한”을 “검사에게 송부한”으로,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처분”으로, “경우에도”를 “경우에는”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검사는”을 “사법경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를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및 청구”로, “요지,”를 “요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이유”를 “신청 또는 청구 이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를 “저장·봉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원은 청구가 이유”를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로, “발부하며”를 “청구인에게 발부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도 승인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승인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검사가 취득한 전기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 제5항에 따라 승인서 또는 청구기각의 통지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7항(중전의 제6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을 “사법경찰관은 제6항”으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을 “경우에는 폐기 이유 · 폐기 범위 · 폐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을 “사법경찰관은 수사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한다.

②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로, “요청하는”을 “요청하려는”으로, “기록한 서면으”를 “적은 서면으로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6항”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로, “지체”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지체”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0항(중전의 제7항) 중 “때에는 자료제공현황”을 “경우에는 자료제공 현황”으로, “확인자료 제공사실등”을 “확인자료의 제공 사실 등”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12항(중전의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0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 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⑫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

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입건을 하지”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 또는 입건하지”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을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2항제2호 · 제3호”로, “같은 항에 따른”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을 “사법경찰관은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을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으로, “그 신청”을 “신청”으로, “확인자료제공 요청의”를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

2.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검사·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통신제한 조치 및”을 “통신제한조치와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 <u>檢事(군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法院(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조치를 許可하여 줄 것을 請求할 수 있다.</u> ② <u>司法警察官(軍司法警察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第5條第1項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檢事に 대하여 각 被疑者별 또는 각 被內査者별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許可를 申請하고, 檢事は 法院에 대하여 그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u> <u><신 설></u>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절차) ① <u>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 제5조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검사(군검사를 ----- 피해자별 -----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를 신청-----.</u> <u><삭 제></u> ③ <u>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신청 및 청구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및 방법과 해당 통신제한조치가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 신청 또는 청구의</u>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신제한 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소재지, 범치지 또는 통신당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通信制限措置請求는 필요한 通信制限措置의 종류·그 目的·대상·범위·기간·집행장소·방법 및 당해 通信制限措置가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을 충족하는 사유등의 請求理由를 기재한 書面(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해당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신청·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

<삭 제>

하 “請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請求理由에 대한 疏明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被疑者 또는 被內査者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하였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⑤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 조치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발부한다. <후단 신설>

⑥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

⑤ 제4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장소 및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④-----

-----. 이 경
우 검사는 허가서를 발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신제한조치
의 허가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삭 제>

· 범위 · 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 5. (생략)

<신설>

⑥ -----

----- 달성
된 -----
-----.
----- 사
법경찰관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
-----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 허가를 ---.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

-----.

-----.

1. ~ 5. (현행과 같음)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른 기각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⑨ 법원은 제1항·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제1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사법경찰관 -----

-----.

② 사법경찰관-----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
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
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
구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③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
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
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④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검열서 또는 긴급감
청서(이하 “긴급감청서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소속기
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야 -----
----- . 이 경우 검
사는 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
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
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 -----

----- 하려는 -----

----- 하며, 소속 기
관-----
----- .

⑤ 사법경찰관 -----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폐기범위·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삭 제

⑧ ~ ⑩ (생 략)

第9條(통신制限措置의 執行) ①第6條 내지 第8條의 通信制限措置는 이를 請求 또는 申請한 檢事·司法警察官 또는 情報搜查機關의 長이 執行한다.이 경우 遞信官署 기타 관련기관등(이하

----- 그 조치로 -----
-----.

⑥ 사법경찰관 -----

----- 경우에는 -----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가
청구된 -----

-----.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① 제6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그 허가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집행하고, 제7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는 그 허가를 청구하거나 승인을 신청한 정보수사기관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執行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 (이하 “통신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장이 집행하며,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는 해당 조치
를 한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
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②

표지 사본을 교부

. 이를 위탁받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

③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이를 위탁받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당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④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검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 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존하여야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와 그 집행을 위탁받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집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④ -----

아니하는 -----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사법경찰관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하거나 통보를 받은 -----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 <단서 삭제>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다만,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 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다만,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2. (생략)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보통검찰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은 제4항 각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⑤ 사법경찰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수사기관의 장 ---. ---- 수사처검사는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군사법경찰관은 -----

-----.

⑥ 사법경찰관, 수사처검사 ---
----- 각 호 ---
----- 경우 -----

제1항부터 -----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신 설>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송신·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 다만,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 다만,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날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송신·수신-----
----- 집행한 -----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 . 다만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
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
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소
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
은 제외한다.

<삭 제>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

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① 사법경찰관은 -----

[illegible]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2. (생략)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 및 청구-----

----- 요지 및 -----

-----.

1. 신청 또는 청구 이유---

2. (현행과 같음)

3. -----.

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 ·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 저장 · 봉인하여 -----
-----.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도 승인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 -----

-- 청구인에게 발부하며-----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받
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
야 한다.

<신 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
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

⑥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
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
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
지 아니한 경우: 집행종료일로
부터 14일 이내

2.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승인청
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
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3. 검사가 취득한 전기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
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 제5
항에 따라 승인서 또는 청구
기각의 통지를 송부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

⑦ 사법경찰관은 제6항-----

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우에는 폐기 이유 · 폐기 범위 · 폐기 -----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

-----.

②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통신사실 확인자료 -----

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illegible]

1.·2. (현행과 같음)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 요청하려
는 -----

----- 적은 서면으로 검사에
게 허가청구를 신청하고, 검사
의 청구-----
----- . <단서 삭제>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6항-----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지체 -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⑩ -----

--- 경우에는 자료제공 현황 -

-- 확인자료의 제공 사실 등 --
---- 적은 -----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

--.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0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⑧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⑨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⑫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7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

-----.

1.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하
다)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
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후단 신설>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
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
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아니하는 처분 또는 입건하지

다만, 사
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
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
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
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은 경우

2. 기소중지·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제6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제6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가. 수사처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

<삭 제>

2. 수사중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
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
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으로서 검사로부터 기소 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단서 신설>

<신 설>

3. -----
--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
터 1년이 지난 -----

----- . 다만, 제6조제7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
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
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
내로 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이하 “수사처검사”라 한다)는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

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1.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
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
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
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
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
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2.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
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1호 단서
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 4. (생략)

을 송부한 사건에 관하여 이를 처리하는 검사로부터 기소 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각각 1년을 3년으로 한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다만,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

해당 -----
-----.

1. ~ 4. (현행과 같음)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

-----.

<삭 제>

⑤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통지를 한 사법경찰관 또는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u><신 설></u>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u>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u>	<u>수사처검사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u> ⑦ 제6항----- <u>사법경찰관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3항 ----- 신청-----</u> ----- ----- <u>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u> --. <u><삭 제></u>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 <u>사법경찰관 -----</u> -----
---	--

하는 <u>통신제한조치</u> 및 <u>통신사실</u> <u>확인자료제공</u>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② <u>제1항</u>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 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u>통신</u> <u>사실확인자료</u>의 보관기간 그 밖 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 <u>하여 필요한</u>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u>통신제한조치와</u> <u>검사·사</u> <u>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u> <u>장이 이 법에 따라 하는</u> ----- --. ② <u>제1항</u>----- ----- ----- <u>통신</u> <u>사실 확인자료</u>의 보관기간, --- ----- <u>필</u> <u>요한</u> ----- -----.
--	--